

목차

1. 서론
2. 艮齋가 진단한 현 세대
3. 제국주의 시대에 무너지는 왕조
 - 1) 高宗皇帝 죽음
 - 2) 巴里長書 사건
4. 전통과 개화의 갈림길에 선 개인
 - 1) 斷髮令
 - 2) 再婚論
5. 결론

1. 서론

艮齋 田愚(1841~1922)는 대량의 문집을 남기고 다수의 제자를 양성한, 韓末 대표적인 선비이다. 그는 學派를 형성할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기에 조선 후기 유학사에서 빠짐없이 거론된다. 간재가 남긴 문집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전한다. 간행 방식에 따라 나누면 木版本, 活字本, 筆寫本이고, 간행 장소에 따라 나누면 龍洞本, 晉州本, 華島本이다. 세 판본의 편차나 내용이 다소 달라서 이를 비교 검토하고 재정리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체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간재의 구체적인 견해는 목판본(용동본)이나 활자본(진주본)에는 빠져 있고, 필사본(화도본)을 통해서만 확인되었다.



찰하셔서 보위를 태자에게 넘겨주시고 노후를 덕수궁에서 보내시다가, 병합 후에는 특히 황족의 대우를 받으시고 화창한 봄바람 속에 평화의 나날을 보내심은 모두가 우러러 아는 바인데 [殿下의 宏量으로 茲에 國勢의 所嚮을 察히사 位를 太子에 讓히시고 老後를 德壽宮에서 養히시다가 併合後에는 特히 皇族의 對偶를 受히시고 春風駘蕩의 裡에 平和의 日月을 送히심은 人皆仰知하느 바이더니]"라고 서술했다.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가 창간한 기관지로서 일본을 대변하는 논조가 강한 신문이다. 그러므로 고종이 스스로 판단하여 乙巳勅約을 맺었고, 純宗에게 讓位했으며, 韓日合邦 이후 더욱 대접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선의 독립을 목표로 민족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고종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양국의 관계가 평탄하지만은 않은 때에 고종이 갑자기 사망했다. 일본의 부당한 침략에 반발하던 민중은 ‘고종 독살설’로 인해 적개심을 더욱 불태우며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매일신보』는 고종이 병환으로 사망했다고 여러 차례 변론한다. 고종의 사망으로 촉발된 민중의 반발을 예사롭지 않게 보았다는 방증이다. 그중 1919년 3월 16일 ‘無根의 虛說’이라는 기사에서는 독살설을 일축하기 위해 고종이 사망하기 닷새 전부터 口渴症이 있었다고 언급한 후, 병환이 생긴 당일 밤 9시 10분부터 고종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했다.

윤소영(2011)은 「한·일 언론 자료를 통한 고종 독살설 검토」(『한국국민족운동사연구』 66, 한국민족운동사학회)를 통해 고종이 사망한 직후 보도된 한국과 일본의 신문·잡지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고종의 발병부터 임종까지의 과정을 재구성한 바 있다. 그는 고종의 발병과 임종을 지킨 도가와 기누코[戸川錦子] 여의사, 가미오카 가즈유키[神岡一亨] 측탁의, 하가 에지로[芳賀榮次郎] 총독부의원장 등이 일괄적으로 腦溢血로 진단했고 병세에 관한 상세한 보도도 뇌일혈의 전형적인 증상인 점, 순종이 이미 일본까지 방문하며 한국병합의 현실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 육군 장교가 된 李垕 왕세자와 일본 황녀와의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이미 퇴위하여 실권이 없는 고종을 일제가 암살해야 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고종이 독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고종 독살의 증거로 제시되는 시신 부패 문제는 즉시 염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했다. 요컨대, 고종이 여전히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을 원하고 있고, 이은 왕세자와 일본 황녀의 결혼이 정략결혼에 불과하다고 믿고 싶은 민중의 염원 때문에 고종 독살설이 다양한 내용으로 윤색되었다고 보았다.

고종의 死因은, 그가 일제의 침략에 순응하여 윤택한 삶을 영위한 왕족인가, 일제의 간섭에 불응하다가 비참하게 타살당한 왕족인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당시 유학자들도 이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國葬을 앞두고 상복에 대한 첨예한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 주제로 독립적인 글을 남긴 유학자들은 아래와 같다.

- 曹兢燮의 「服辨」: 옛 임금이 이미 새 왕조의 봉작을 받았으니, 내가 또 옛 임금을 위해 상복을 입는 것은 새 왕조의 신하가 되는 것이다. 舊君既受新朝之封爵, 我又爲舊君服君服, 是爲新朝之陪臣.
- 吳震泳의 「服辨辨」: 조선의 丁丑下城(1637년에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나와 삼전도에서 청 황제에게 항복한 사건) 이후 여러 왕조에서 벼슬한 선생들도 모두 청나라의 신하로 여겨서 꾸짖고 욕해야 하는가? 我朝丁丑下城以後列聖朝出仕諸先生亦皆認爲清虜之陪臣而詬罵之乎?
- 崔秉心の 「告八域文」: 무릇 사람에게 몸이 있는 것은 부모가 낳고 임금이 먹이고 스승

이 가르쳐서이니, 셋의 같은 은혜는 당연히 죽음으로 보답해야 한다. 夫人之有身，父生之君食之師教之，三有同恩，報當以死也.

조금섭은 일본에 굴복한 고종을 위해 상복을 입는다면 일본의 신하가 되는 격이라고 단언했다. 오진영은 조금섭의 논리대로라면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굴복한 인종 이후의 관리들은 모두 청나라의 신하냐고 힐문했다. 최병심도 부모와 군주와 스승의 은혜는 똑같이 죽을 각오로 깊어야 할 만큼 무겁다고 주장했다. 병인년(1926)에 순종이 사망하자 朴仁圭는 「丙寅國服說」을 지어 “만약 아버지가 생업에 실패하여 가족을 고생시켰다고 (아버지의 장례에) 역시 상복을 입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假如其父敗覆産業，使家人喫辛苦，亦可言不服耶]”라고 반문한다. 오진영과 최병심은 모두 간재의 제자이며, 박인규는 최병심의 제자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간재의 제자나 師孫이 주축이 되어 고종의 상복을 갖추어야 한다는 논설을 남긴 것이다.

조금섭의 「복변」을 겨냥해 오진영이 「복변변」을 짓기 전, 간재는 조금섭이 韓東愈에게 답한 편지를 보고 변론을 썼다. 이 편지는 공교롭게도 진주본(오진영이 주도하여 발간한 간재 문집)에는 보이지 않는다. 용동본에는 ‘조금섭의 주장+간재와 郭鍾錫의 변론+간재의 변론’으로 되어 있다. 화도본에는 후반부인 ‘간재의 변론’이 빠져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누락된 부분을 가지고 「題曹兢燮書辨後」(後編, 권23, 題跋)를 만들었다. 즉, 용동본에는 雜著에 포함된 한 편의 글이 화도본에는 잡저와 제발에 각각 나뉘어 실려 있다.

『良齋私稿』(용동본), 後編續, 권5 雜著, 曹兢燮答韓氏書辨【庚申(1920)】	
조금섭의 주장	간재와 곽종석의 변론
德壽宮服制，古無所據，鄙人以不服爲斷。→ 덕수궁 복제는 전례가 없음	宋徽·欽·高三宗之喪，胡致堂·黃端明·朱子，皆以天子之禮處之，而用三年之制矣。何謂古無所據，而斷以不服也？→ 고종의 장례는 금나라 침략을 받은 송나라 휘종·흠종·고종의 장례와 같음
舊君既受新朝之封爵，我又爲舊君服君服，是爲新朝之陪臣。→ 고종이 일본의 봉작을 받았으므로 고종의 상복을 입는 것은 일본의 신하가 되는 것임	朱子出身於高宗朝，而於其喪，又爲三年服議，渠敢指斥朱子爲金虜之陪臣乎？我朝丁丑下城以後，列聖朝出仕諸先生，亦皆認爲清虜之陪臣，而詬罵之乎？→ 송나라 고종의 장례에 삼년복을 주장한 주자를 금나라의 신하라고 배척할 수 없으며, 병자호란 이후 벼슬한 조선 관리들을 청나라의 신하라고 욕할 수 없음
北地王，哭於昭烈廟而自殺，所以自明其爲昭烈之孫，而不以降王爲父也。→ 복지왕(蜀漢 劉禪의 아들 劉禪)은 소열왕(劉備) 묘 앞에서 통곡하고 자살했으므로 항복한 왕을 아버지로 둔 것이 아님	此一著，是渠以亂賊自供之辭也？假使北地奉使東吳，未及復命，而後主降，既而後主即病歿。使兢燮而處此地，則其不曰“是爲降王，非我父也，吾何爲制服也”？其心何嘗有君有父矣乎？其罪奚止爲不忠不孝而已哉？渠又謂北地懟其父而滅其種，以悖逆心，觀古今人，無非懟父怨君之人，人之存心，可不慎諸。○欽宗降金而廢爲庶人矣。朱子於黃端明墓文，特書欽宗皇帝訃聞，而黃公奏曰：“太上皇帝【高宗】於欽宗，嘗北面事之，有君臣之義。”聖賢之於君父，其用心仁厚，蓋如此，彼曹也，其於君父，惟其忍心之是施，而不念仁義之可勉也，哀哉！→ 유심이 유선의

	명을 받들고 東쪽으로 가서 복명하기 전에 유선이 曹魏에 항복하고 얼마 후 병사했다면, “항복한 왕일 뿐, 나의 아버지는 아니므로 상복을 입지 않겠다.” 라고 말할 수 없음. 주자는 黃中(端明殿學士를 역임) 묘문에서 ‘흠종의 부고를 들은 황중이 고종에게 군신의 의리를 아뢰는 일’을 특필함
我自是四十年光武皇帝之遺民， 豈日本李太王之遺民乎？ → 광무황제의 유민이고 일본 이태왕의 유민은 아님	我聞宋朝諸賢，皆以欽宗爲君，以遺民自處，而服君之服者矣。未聞有言我是靖康帝之遺民，而非金朝趙庶人之遺民而不服者也。 → 송나라 제현은 흠종을 군주로 여기고 유민을 자처했으며, 정강제의 유민이고 금나라 조서인의 유민은 아니라고 한 적이 없음
由吾之說，然後知君不可一日忘社稷。自註，殉社稷則服之，不殉則不服。 → 사직을 따라 죽었다면 상복을 입고 그렇지 않았다면 상복을 입지 말 것	徽欽未嘗殉社稷，而當時臣民皆以君服服之，況我先帝之暴崩，豈非殉社稷之義烈乎？而曹也之言，乃如此。 → 휘종은 사직을 따라 죽지 않았지만 당시 신하와 백성이 모두 상복을 입음
良齋·俛字云云。世人皆爲之辨明，吾必不復云。 → 이 부분을 통해 이상의 내용이 객중석의 변론이기도 함을 알 수 있음. 아래는 오묘한 간재의 변론임	
余既爲此辨，有疑先帝既見廢而喪其位矣，臣民惡得而君之哉？余曰：“宋朝三宗事，吾既言之矣。若夫周敬王，出居狄泉四年，而春秋不廢春王正月；魯昭公被逐失位，而居乾侯八年，聖人且書昭公之年；唐武曌廢中宗，而革唐稱周，立宗社而定年號矣，然而綱目猶以中宗紀年，又必書帝在某州。凡此皆聖賢所以立法之嚴，而杜禍亂之漸也。況我先帝但有代理之命，而勒行禪位之式，此在臣民之地，曷勝痛迫之情？尤何敢以非吾君而不之服哉？噫！如金·曹二賊者，眞無人理也。無人理者，又何足誅乎？”【先是金澤榮答曹書，有仇讎何服之凶說，是則金實爲嚆矢。】 → 주나라 경왕이 적천으로 피신했어도 『춘추』에는 ‘춘왕정월(주나라 천자의 정월)’으로 적혔고, 노나라 소공이 왕위에서 쫓겨나 간후에 머물렀어도 성인이 ‘소공 몇 년’이라고 썼으며, 당나라 무조(측천무후)가 중종을 폐위하고 국호를 바꾸었어도 『강목』에서는 ‘중종 기년’을 사용함. 김택영이 조금섭에게 ‘원수에게 무슨 상복을 입어주겠는가?’라는 망언을 먼저 함	

김택영과 조금섭이 일본에게 관직을 받은 고종을 항복한 왕, 심지어 원수로 간주하며 상복을 입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간재는 주나라 경왕, 노나라 소공, 당나라 중종, 송나라 휘종·흠종·고종이 모두 외세의 침략이나 내부의 반란으로 실권했어도 신하들이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상복을 갖추어 입은 사례를 들어 크게 비판했다. 이후 최병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간재는 고종에게 나라의 맥을 끊은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조금섭은 대한제국의 신민이 아니라고 맹렬히 공격했다.

與崔秉心【辛酉(1921)】(세 판본에 모두 있음)

競與韓書謂“先帝不當服”，故余辨而斥之。今渠覆辨，無慮數千言，而竟無一句悔改語，其認前說爲至當之言，明矣。豈可曰“國邊人”乎？其所謂“後來受服，以有後來之烈”云者，尤不成說。大喪後幾月，渠不聞此報，而與人累書辨爭耶？且既受服，則前日云云，當自謂未安而止矣。乃復廣引博據，以證先帝與國絕之罪，豈可謂有一分臣民之心者乎？假使鄙說百孔千瘡，而其主意尊帝而受服也。彼辨百伶百俐，而其骨子，則罪帝而無服矣。以此斷之，彼之凶肚，自無所遁其情矣。

대체로 김택영과 조공섭은 보수적 경향만 고집하지 않은 인물로 꼽힌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공섭은 당시 조선에서 서구 신문물의 실제 파악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강유위와 양계초 등의 저작을 통해 공화제와 그 바탕이 되는 이념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물이 『困言』과 「非共和論」인데, 결국 신분제를 기반으로 한 전제 왕정에 머물러 있으면서 공화정을 논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조공섭이 서양문명의 존재 자체를 도외시하거나 그 부강함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당시 조선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도학자들이 그동안 일삼았던 허습을 버리고 도학의 본래 모습인 실용적·실질적 요소를 재소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성희, 「식민지 시기 영남유림의 서양 정치제도 연구와 대응-이인재와 조공섭을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29,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9, 107면, 111면, 112~113면)

다만, 고종의 상복 문제는 허습과 실용의 차원에서 논할 사안이 아니었다. 고종을 여전히 대한제국의 황제로 대우할 것인가, 나라의 멸망을 초래한 죄인으로 치부할 것인가?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유학자들은 각자의 논리로 자신의 신념을 강하게 표출했다.

2) 巴里長書 사건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위해 1919년 1월 18일에 세계 각국 정상들이 파리에 모여 강화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담에서 베르사유 조약 등 주요 조약들이 1920년까지 체결되었다. 한국의 유학자들은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고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장문의 서한을 작성하여 파리 강화 회의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 일은 의병을 일으켜 항일 투쟁했던 호서지방의 金福漢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들이 작성한 서한은 현존하지 않지만, 요지는 명성황후와 고종의 시해, 한국주권의 찬탈 과정을 폭로하고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때 영남에서도 곽종석과 金昌淑을 중심으로 같은 일이 추진되어 嶺南本과 湖西本을 비교 검토하던 중, 파리 강화 회의 대표로 선정된 김창숙이 급히 上海로 출발하게 되어 여론에 따라 영남본을 주어 출발시켰다. 장서 말미에는 유림 대표 137명이 서명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134명으로 되어 있음)

영남과 호남의 유학자들이 대대적으로 화합하여 추진한 이 일에 호남의 巨儒인 간재는 끝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유림의 많은 지탄을 받았다. 간재 문집을 간행한 간재의 제자들에게도 이 사안은 매우 민감했던 듯하다. 용동본과 진주본에는 파리장서에 대한 간재의 입장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글이 실리지 않았다. 다행히 화도본에 몇 편 남아 있다.

『艮齋私稿』(화도본), 後編, 권14, 書, 答崔愿【己未八月(1919.8)】

鄙人前日之欲遣書, 認爲復辟而禍止於殺身爾, 後日之不署名, 聞其爲共和而又身爲夷狄, 【如郭氏所遭, 是也.】不許, 蓋皆義也. → 복벽(무너진 왕조를 일으킴)을 위해 파리장서를 작성한 줄 알았는데 결국 공화정을 추진하고 夷狄이 되려 한다가에 참여하지 않음

東田見彼酋而無礙, 必有其術而然, 至於我輩拙者, 一入彼疑, 求死不得, 而徒受削禍, 是惡可從其勸而陷於叵測之科乎? 此理曉然而尙有未悟者, 大不可知也.

『艮齋私稿』(화도본), 後編, 권12, 書, 答權政熙·權載春【庚申(1920)】

所示民國儒黨有林福成者, 深恥薙髮變章, 而戒飭其徒, 令作髻用儒服, 聞來不覺聳然喜而喟然歎

也。今天下皆夷制，而爲吾儒者，亦復不重衣冠，不尙禮義，馴致小華化爲眞胡種子，令人痛泣，奈何奈何？來喻謂吾東儒服實賴先生，而彼林某之奮振，亦有感於是也。因之又曰：“見今天下陽脈，一則先生，二則先生，此可謂天下之大幸。”此，殆指螢燭爲太陽之類也，子於是乎不免爲一言之不智矣。如得吾黨諸子，務澄治氣質，使物慾不萌，檢束靈覺，令德性常用，則亦可謂漆黑世界一束明炬也。幸與同志互相警飭，而勉進無已矣。→ 이 부분은 후술할 ‘단발령’과 관련 있음

近日人道所議，非曰不當爲也。【志山金承旨福漢氏之爲排日黨，天下共知之，而其遣子書名，又移書賤子，極要共成其事，則人道所之非進日黨，不其明矣乎？】顧此六十年隱居不出，而飽喫忘世之謗者，乃至屬續之日，忽變舊規，與城中諸人同其事耶？第其主務者李參奉相珪，是觀善社中人，又其趣旨書，恃同門交誼，任自書名爲六七人。此六七人者，皆知鄙意，故多移書令削名矣。今來示嶺友一隊人，譏我爲大失者，不詳其裏許，但見其外樣而然也。此則若聞其曲折，則可以解惑矣。但又有一等人，往往誚余爲不肯與於其事，而曰“是爲忘世・忘儒者流，如此者，恐難以筆舌爭也。”大抵一人一時事，而兩邊喫打，豈非可笑耶？→ 세간에서 배일당으로 지목되는 김복한이 파리장서 서명을 극력 요청했으니 간재 자신도 항일 세력에 가까움. 오랫동안 은거하여 세상을 잊었다는 비방을 받던 사람이 왕(고종)이 임종한 무렵 돌변하여 세간 일에 참여할 수 없음. 주된 실무자 李相珪가 대여섯 명의 서명을 임의로 했는데 이 대여섯 명이 간재 자신의 뜻을 알아차린 후에 여러 차례 글을 보내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함

聖人見天下塗炭，豈不欲出而救之？但時【句】也要出不得，亦且住。【詳見朱子語類。】危亂已極，聖人亦拱手而不能爲。【見楚辭集註。】今如余後生輩，遭此無可奈何之時，如何敢輕易出脚而欲集事耶？雖被人來煎迫，亦只得站立不動也。→ 천하가 도탄에 빠져 있지만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므로 꼼짝 않고 서 있음

간재가 파리장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파리장서에 서명한 이들의 목적이 기존의 왕조를 회복하는 데 있지 않고 공화정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려는 데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기존 연구에서 자료의 부재로 주목하지 못한 부분이다. 둘째,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은거’를 선택한 이상 갑자기 파리장서 서명에 동참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공자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동양의 전통 관념이다. 간재는 『주자어류』에 이러한 관념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종의 장례에 상복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도 간재는 주자의 사례를 여러 차례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곧 간재는 공자에서 주자로 이어지는 정통 유학 사상의 수호자로서 時事에 대응한 인물이다. 유학자로서 정통 유학을 고수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림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사실, 주자의 이론과 합치되지 않는 글이 많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1884년에 아들 田晦九에게 보낸 편지 참조) 왕조가 무너진 제국주의 시대에 너무 고정적인 옛 사상은 더이상 큰 울림을 주지 못한 것이 자명하다.

4. 전통과 개화의 갈림길에 선 개인

1) 斷髮令

1895년에 開化派의 주도로 단발령이 시행되었다. 金弘集 내각의 俞吉濬은 성년 남자가 상투를 자르면 위생에 도움이 되고 일할 때 편리하다고 선전했다.(『관보』 제214호, 건양 1년

(1896) 1월 4일 “몸과 머리카락과 피부는 부모에게 받았으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身體髮膚，受之父母，不敢毀傷，孝之始也]”라는 사상을 몸소 실천해온 유학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간재는 다른 어떠한 사안보다 단발령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1919년에 집 안에 보낸 편지에서 “자손 중 머리카락을 자른 사람이 있다면 만나지 말아야 한다.[子孫中有毀髮者，當不相見]”라고 경고할 정도였다. 다음은 화도본에 보이는 단발령 관련 글이다.

『艮齋私稿』(화도본), 拾遺, 권1, 書, 答趙大鏞【壬寅(1902)】

時事，上繫天運，非人所爲，士流所處之道，前言已詳矣。陳相兄弟之從許，孟子謂之變於鵠舌，伊雒諸公之染禪，叔子憚其流於夷狄。此而猶然，況剃髮妖服以從裔戎者乎？傳曰“素夷狄，行乎夷狄行”，謂爲吾所當爲者耳。前頭禍變，可避則避，不可避則死，皆所謂當爲。此，聖人所以有“賢者避世”·“至死不變”之訓。是爲吾儒鐵限一步，不可踰也。聞，日必冠帶讀書，必考音義。考音義，窮理之先務；正衣冠，律身之要道，而俗下學師，不甚留意。故少輩看書·作文，率勿鹵莽，撿身·飭躬類，皆荒誕。以是自誤而誤人，大可歎也。→ 陳相이 許行을 따르자 맹자가 南蠻馱舌이라고 비판했으며, 伊雒의 공들이 禪에 빠지자 정자가 夷狄에 휩쓸렸다고 싫어했음. 禍變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 當爲임. 그래서 성인이 “현자는 세상을 피한다”, “죽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을 남김

『艮齋私稿』(화도본), 拾遺, 권1, 書, 與白元基

(……) 近日剃髮之騷，未知信否，而士子既受聖門之戒，則豈從夷狄之俗？比如婦女受污·人臣屈節，固如不可避，則有死而已。是宜豫講素定，而無臨難苟免之恥也。然若能於平常無事時，用誠·敬·省·克工夫而不輕放過，則縱遇刀鋸鼎鑊，亦不愜怯矣。→ 단발령은 부녀자가 정조를 잃고 신하가 절개를 굽히는 것과 같으니 피하지 못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음

『艮齋私稿』(화도본), 拾遺, 권3, 序, 贈金炳周小序【庚戌(1910)】

林湜，朱門人，以太府少卿使金。金主賜以衣，不服。金人曰：“君命，何可慢也？”曰：“宋正統相承，群臣服，視其品，今易左衽，有死而已。”【無愧師門。】金主不能屈。【義理何等剛正。】使還，寧宗獎之。余謂吾儒自先聖先王以來，自有綱常禮制，若逼以邪說，行剃髮窄服，有死不可從。君子處夷狄猾夏之世，既無兵權可以攘除兇鋒，則惟以不亂群·遠巖牆爲第一義。金君仲文再三入海，風義非餘子所及，於其歸書此爲贈。→ 주자의 문인 林湜은 太府少卿으로서 금나라에 갔을 때 금나라 왕이 하사한 옷을 입지 않음. 그릇된 말로 핍박하여 머리카락을 자르고 폭이 좁은 옷을 입게 한다면 죽더라도 따를 수 없음

『艮齋私稿』(화도본), 後編, 권16, 書, 答高一柱【己未(1919)】

(……) 聞金志山對彼曾言：“吾之一團赤心，惟在保髮。汝輩傷我一髮，我必死。”【此，出徐近小齋與余書矣。】繼而聞，至今尚保袖髮，何其偉歟？→ 김복한이 죽음을 각오하고 상투와 한복 차림을 지키고 있음

『艮齋私稿』(화도본), 拾遺, 권2, 雜著, 新學論【上下逸】

凡彼之所勸，皆害於我，而利於彼者也；彼之所禁，皆害於彼，而利於我者也，凡我人之有志爲國家者，宜知所擇也。彼今日勸新學，則爲新學；勸舊學，則爲舊學；今日令削髮，則削髮；明日令長髮，則長髮。此輩胸中只有一‘利’字，務利之害，已至於開門揖盜，亦已至於賣國販君矣。凡我

人必將一‘義’字立爲骨子，死生以之也。→ 새로운 학문과 복장을 권하는 이들은利만 추구하여 나라와 임금을 파는 데까지 이를 것이니 우리는 반드시 義를 지켜야 함

단발령에 대한 간재의 입장은 매우 극단적이다. 그는 단발령을 화두로 삼을 때에는 유난히 ‘죽음[死]’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21일에 ‘전간재 선생께 고하다[告田良齋先生足下]’라는 영국인의 글이 게재되었는데, 유학자들의 스승인 간재가 단발령을 반대하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었다. 이를 보고 분노한 간재는 ‘『매일신보』를 보고 붓을 휘갈겨 써서 28개의 死자를 얻었다[觀每日申報，奮筆而書，得二十八死字]’라는 제목의 칠언고시를 지었다. 이 시는 감정이 과해서인지 세 판본에 모두 수록되지 못하고 간재의 한시집인 『臼山先生風雅』에만 실렸다. 간재가 결사반대한 단발령은 당시에 유학자는 물론이고 일반 백성에게도 큰 반감을 샀다.

2) 再婚論

갑신정변 3년 후인 1888년 1월 13일에 갑신정변의 지도자 중 한 명인 朴泳孝가 망명지인 일본에서 집필한 上訴文에는 구체적인 가족관계상의 변화가 나타났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총설DB 참조) 그중 “숨을 내려 남자가 취첩하는 것을 금하고, 과부가 개가하는 일을 임의대로 할 것을 허락할 것”, “남녀 부부는 권리가 균등함” 등의 조항은 여성의 재혼권 및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시사 잡지 『東明』 제38호(1923.5.20)에는 ‘世界各國의 慣習 制度로 본 寡婦의 再婚問題’라는 글이 실렸다. 이밖에도 재혼에 대한 각종 근현대 자료가 존재한다. 재혼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두드러진 화두가 확실하다. 간재는 再娶, 再嫁에 대한 문제를 모두 거론한 바 있다. 먼저 재취론을 살핀다.

『良齋私稿』(화도본), 拾遺, 권1, 書, 與李敬培【○辛丑(1901)】

如聞尊王父丈，自以春秋隆邵，欲於高明除服前，使之續絃，無乃誤傳耶？苟其然者，是萃哀樂于一身，合吉凶於同室，豈人情天理之所當出耶？禮必三年而後娶，達子之情也。故本朝大典，四十以上而有父命者，許暮年後改娶。尤庵先生以其孫喪配時，三世皆鰥居，猶且葺除後呈狀春曹，而始令改聘，是其爲義，豈不甚明且嚴哉？幸將此意子細陳稟，必圖所以從禮而畏法焉。誼在契家，禮義守成，豈有彼此？此以瀝誠懇告，想亦樂聞而認爲以德之愛矣。今見夷獸侵凌，民爲鬼魅，吾脩之于禮義，苟不分外擔夯，如水益下之俗，誰將與扶？有時思之，苦痛苦痛。

이경배의 조부는 이경배가 상복을 벗기도 전에 재취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간재는 예법대로 삼년상 이후 재취하거나, 『大典』의 ‘사십 세 이상의 남성은 부모의 명이 있는 경우 일년상을 치른 후 재취를 허락한다’라는 조항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취는 부정하지 않되 재취하는 시점을 중시한 것이다. 그는 哀樂이 한 몸에 모이거나吉凶이 한 집에 합쳐지는 일은 인정상, 천리상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간재가 정한 「집안 규칙[家規]」에는 “아내의 상복을 벗기 전에 개취하는 사람은 종친회에서 벌을 내려야 한다[妻服未除而改娶者，宜宗會而施罰]”라는 항목이 있다. 다음은 재가론이다.

『良齋私稿』(용동본, 화도본), 前編, 권13, 雜著

(……) 國家以所以維持而不傾覆者，以三綱之未墜也。近見一朝士上章，請定孀婦改醮法例，噫！

何太甚也? 其章引程太中取甥女之寡者, 以歸嫁之, 及尤菴先生與權氏書, 論改嫁女不可嚴刑峻法以禁之兩段, 以爲證佐, 余謂程公事, 朱子嘗答此與孤孀不可再嫁相反之問曰: “大綱如此, 但人亦有不能盡者.” 【朱子語止此.】若遇不能自盡者, 則亦不得已而爲之地也. 若正論道理, 則程子豈不曰: “失節事極大, 餓死事極小云爾乎?” 尤翁云云, 又以爲與其變出於不忍言之地, 不如公然嫁與無故之人之爲愈, 則其立言之微意可見, 若正論道理, 則先生豈不曰“雖非配身, 而家畜失節之女, 豈安於心, 不如不畜”云爾乎? (……)

재가는 그 자체를 부정했다. 간재는 과부의 재가법을 제정하려는 무리들이 程珦(정이·정호의 부친)이 과부가 된 질녀를 취한 사례, 송시열이 개가를 엄벌로 금할 수 없다고 말한 사례를 증거로 삼는데, 모두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 곧 주자가 “대강은 이와 같으나 사람이 역시 다 할 수 없는 바가 있다.[大綱如此, 但人亦有不能盡者]”라고 하여 정형의 일이 일반적인 사례가 아님을 밝힌 것, 송시열이 “첩은 예를 갖추어 맞은 아내가 아니나 집안에 절개를 잃은 여자를 두고 가까이 지낸다면 어찌 마음이 편하겠는가? 그런 사람은 집안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을 반박의 증거로 삼았다.

5. 결론

간재 문집에는 특수한 시기에 형성된 양자택일의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고종황제 장례에 상복을 입을 것인가? 파리장서에 서명할 것인가? 머리카락을 자를 것인가? 상대가 사망한 후에 재혼할 것인가? 왕족 질서와 개인 일상의 격변으로 인해 20세기 초 동아시아 문화권은 비슷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대한 동아시아 유학자의 각기 다른 대응을 검토하는 작업은 추후 과제로 남긴다.